학생 생활 규정

1. 학생 선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징계)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학교규칙에 관한 법규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학교생활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선도는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개인의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생활 규정의 제·개정 절차)

① 제·개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사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제·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생활 규정 제·개정 시에는 구성원 1/3 이상이 발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및 심의)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생활 교육위원회는 교감, 종교인성부장,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 학년부장, 해당학년 생활지도계, 생활안전부 기획(기록) 교사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이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5조(기능)

① 학교생활 교육위원회는 벌점기준 내. 외의 사안에 대하여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6조(사안설명 및 의견진술) 학교생활 교육위원회는 심의 전에 생활안전부 해당 학년 담당 교사로부터 사안내용의 설명과 담임교사로부터 대상 학생의 품행 등 정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담임, 학생 또는 학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름을 의미한다.

제7조(학교장의 재심요구 및 결재)

①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징계 사안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징계 여부와 징계의 종류 결정은 학교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제8조(재심 청구)

① 학교장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심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18조 2항에 따른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적교의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법 제18조의 3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담임,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징계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기록 및 사무 처리)

①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생활안전부 기획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및 보관한다.

②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해당 학년생활지도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및 보관한다.

제3장 징 계

제12조(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는 3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이수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3일에서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학교장은 퇴학처분의 징계를 내리기 전에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의「가정학습」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3조(징계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

㉮ 학교 내의 봉사는 누적된 벌점 총점이 1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생을 등교시켜 생활안전부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가능한 수업권은 보장해야 한다.

㉯ 봉사활동의 기간과 내용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회봉사

㉮ 사회봉사는 누적된 벌점 총점이 2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 행정기관, 공공 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여건이 안 되면 학교 내에서 징계기간동안 봉사활

동을 한다.

㈏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의 내용과 시간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시기를 결정한다.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특별교육이수는 누적된 벌점 총점이 3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등의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 특별교육이수의 내용과 시간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시기를 결정한다.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 중 누적된 벌점 총점이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하에 실시한다.

㈏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퇴학처분

㉮ 퇴학처분은 누적된 벌점이 50점 이상에 해당 되는 자로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퇴학 처분을 할 때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한다.

⑥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징계 시 개인별 성향을 고려하고 상담실과 연계해서 학생 성향에 맞게 징계지도를 실시한다.

제14조(징계조치 분리) 징계는 학생선도규정(상·벌점제)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조치한다.

제15조(징계 결과 처리)

① 징계 처분 사실은 학생징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②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에 따른 것이므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 · 벌점

제16조(목적) 일관된 방법으로 지도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며 학교규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 한다

제17조(방법)

① 전교사가 상·벌점을 입력하고,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SMS)로 통보 한다.

② 누적점수가 징계기준에 해당이 될 때에는 생활안전부 학년지도교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

③ 상·벌점은 1년간 유효하며, 익 년에는 소멸된다.

④ 벌점은 상점에 의해 동일한 점수가 상쇄된다.

⑤ 벌점은 1년간 누계되고, 벌점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되며, 징계가 종료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 단, 상점에 의해 상쇄된다.

제18조 (상점별 시상 기준)

상점		표창 구분	비고
개인	20	외부 상(모범상) 우선추천	수시
	25	모범학생 학교장 표창	1학기말
	40		2학기말

※ 모범학생 표창은 1회만 수여함. 또한 상점과 관계 없이 벌점 10점 이상이면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

제19조 (상점 기준표)

영역		번호	상점 내용	점수	비고
학급활동	개인	1	학급 당번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함	2	
		2	아침 학습 준비와 태도가 다른 학생에 비해 매우 우수함	2	
		3	학급 기물(책. 걸상, 사물함 등)을 모범적으로 애용함	2	
		4	학급 환경 보존(청소, 환경미화, 휴지 줍기 등)활동을 지속적이고, 모범적으로 함	2	
		5	담임교사의 학급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줌	2	
		6	학급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함	2	
	집단	7	교칙준수 모범 학급	2	
		8	환경보존 우수 학급	2	
		9	환경미화 심사, 체육대회 등 학급 단위 행사에서 우수학급으로 선정된 학급 전체 학생	2	
		10	내. 외부 고사에서 해당학년 1위를 한 학급 전체 학생	2	
신고		11	갈취, 절취행위 신고	5	
		12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행위 신고	5	
		13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행위 신고	3	
		14	분실물 습득신고	2	
		15	급식 도식행위 신고	2	
		16	흡연· 음주 행위 신고	2	
		17	기타 비행, 이탈행동 신고	2	
교내생활		18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함	2	
		19	교직원에게 모범적인 행동으로 칭찬을 받는 경우	2	
		20	게시물 또는 공공 시설물에 대한 환경보존에 앞장서는 경우	2	
		21	절전 실천 및 공동 소모품을 절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교외생활		22	품행을 바르게 하여 외부로부터 칭찬이 제보되고 사실이 확인된 학생	5	
		23	지역주민 등 외부인에 의해 선행이 제보되고 사실이 확인된 학생	5	
		24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언론 보도 등)	10	
예절		25	인사예절 및 기타 생활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26	학우간에 고운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됨	2	
	27	교무실 출입 예절을 잘 지키는 학생	2	
규정 준수	28	용의 복장 규정을 지속적으로 잘 준수함	2	
	29	두발 규정을 지속적으로 잘 준수 함	2	
	30	기타 임의규정을 잘 준수 함	2	
수업 태도	31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하며, 학구적인 모습이 타 학생에게 귀감이 됨	2	
	32	항상 올바른 수업태도로 타 학생에게 귀감이 됨	2	
	33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해 와 수업에 도움을 줌	3	
	34	수업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바른 언행이 다른 학생에게 귀감이 됨	3	
기타	35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중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심의 결정	

제20조 (벌점 징계 기준)

벌점	징계 구분	비고
10	학교 내 봉사	
20	사회 봉사	
30	특별교육 이수	
40	출석정지 10일	
50	퇴학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심의

제21조 (벌점 기준표)

영역	번호	세부내용	벌점	비고
예절	1	학우에게 지나치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	2	
	2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	5	
	3	언행이 불량하여 외부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10	★
	4	교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30~50	심의 결정
준법 / 질서	5	넥타이 미착용이나 교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	
	6	휴식 및 점심시간에 교실, 복도에서 지나치게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1	
	7	급식 시 새치기나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2	
	8	지정된 교복(동복, 춘추복, 하복 구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2	
	9	일과 중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2	
	10	노출된 형식의 목걸이와 신체를 이용한 피어싱을 하는 행위	2	
	11	두발규정을 위반한 경우(염색 등)	3	
	12	슬리퍼를 신고 등,하교를 하는 경우	3	
	13	급식 시 도식(盜食)을 하는 경우	5	
	14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등. 하교를 하는 경우	5	
	15	학생 출입이 제한된 교내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5	
	16	흉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5	

	17	일과 중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3	
	18	휴교 일에 근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학교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5	
	19	문신을 하는 경우	10	
	20	일과 중 무단외출을 하는 경우	10	★
	2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10	★
	22	학교 출입 시 월장을 하는 경우	10	★
	23	공공문서(인장. 제 증명 포함)를 위조, 변조, 대여한 경우	10	★
	24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연류 되었다가 훈.석방된 경우	10	★
	25	징계지도를 불응하는 경우	10	★
	26	불법으로 서클을 조직. 운영하거나 가입 하는 경우	10	★
	2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되어 구속된 경우	20	★
	28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20	★
	29	품행이 극도로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0	심의결정
시설 훼손	30	지나친 장난으로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	5	변상조치
	31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5	변상조치
	32	책. 걸상. 사물함 등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10	★변상조치
	33	교내 공공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10	★변상조치
수업	34	수업교재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2	
	35	수업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	2	
	36	수업 중 엎드려 있거나 수면하는 경우(2차)	2	
	37	수업 시간 중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3	
	38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	3	
	39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3	
	40	수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책이나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3	
	41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3	
	42	수업 분위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5	성찰교실 입실조치
시험	43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	★/심의 결정
	44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경우	10	★/해당 과목 0점
	45	금지된 물품(휴대폰,전자기기등)을 소지하는 경우	10	★/해당 과목 0점
	46	다른 학생을 강제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30~ 50	해당과목 0점/ 심의 결정
	47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탐지하였거나 절취한 경우	30~ 50	해당과목 0점/ 심의 결정
근태	48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 (1회)	2	
	49	무단결석 1회	3	
약물	50	담배, 라이터를 소지한 경우	5	
	51	술을 소지한 경우	10	★
	52	흡연을 한 경우	10	★

	53	음주를 한 경우	20	★
	54	환각성 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20	★
	55	환각성 약물을 복용한 경우	20	★
환경 보존	56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1	
	57	껌이나 침을 뱉는 경우	1	
	58	책. 걸상이나 사물함 또는 기타 시설에 낙서를 하는 경우	2	
	59	화장실 휴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경우	2	
	60	공공 게시물을 훼손하는 경우	2	
퇴폐 행위	61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2	
	62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3	
	63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6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5	
금품	65	금품 절.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66	금품 절.갈취 행위에 동조한 경우	20	
	67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20	
	68	금품을 갈취한 경우	30	★
	69	금품을 절취한 경우	30	★
	70	공금을 유용한 경우	30	★
집단	71	불법 집회에 참여한 경우	10	★
	72	학생을 선동하여 불법 집회를 연 경우	20	★
학교 폭력	73	담임 처리 사안에 해당되는 사안	5	
	74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적용		심의 결정
기타	75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중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심의 결정

2. 학생 용의 복장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학생다운 면모와 품성을 유지하고 내실 있는 인격의 함양과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가지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제2조(교복의 종류 및 형태)

구 분		종 류	색 상	비
동복	상의	자켓	감청색	· 단추는 교표를 새긴 제품
		Y 셔츠	백색	· 왼쪽가슴 주머니 바깥부분에 교표 부착
		V형 스웨터	감청색	· 왼쪽가슴에 교표부착
		넥타이	자주색	· 가는 줄기
		휘장(뱃지)		· 학교 뱃지
		명찰	학년별 색상	
	하의	바지	감청색	· 바지통은 구입 시 형태 유지
춘추복	상의	Y셔츠	백색	· 동복 혼용 · 춘추복 시 하의 밖으로 나오게 착용
		명찰	학년별 색상	· 왼쪽주머니 윗선에 부착
	하의	바지	감청색	· 동복 혼용
하복	상의	Y셔츠	베이지색	· 반팔 · 밑자락이 하의 밖으로 나오게 착용
		명찰	학년별 색상	
	하의	바지	진베이지색	
생활복	상의	카라티셔츠	베이지색	· 반팔 · 밑자락이 하의 밖으로 나오게 착용
	하의	반바지	진베이지색	

제3조 교복 규격

구 분		크기	85	88	91	94	97	100	103	106	109
하복	상의	가슴둘레	95	98	101	104	107	111	115	119	123
		허리둘레	90	93	96	99	102	106	110	114	118
		뒷기장	67	67.5	68	68.5	70	71	72	73	74
	하의	바지통	허리30인치 기준 $7\frac{3}{4}$인치~8인치								
동복	상의(자켓)	가슴둘레	95	98	101	104	107	111	115	119	123
		어깨	41	42	43	44	45	46	47	48	49
		허리둘레	90	93	96	99	102	106	110	114	118
		밑단둘레	98	101	104	107	111	115	119	123	127
		상의장	65	66	67	68	69	70	71	71	72
	와이셔츠	소매부리	27.5	28	28.5	29	29.5	30	30.5	31	31.5
		가슴둘레	95	98	101	104	107	111	115	119	123
		어깨	41	42	43	44	45	46	47	48	49
		허리둘레	90	93	96	99	102	106	110	114	118
		상의장	67	67.5	68	68.5	70	71	72	73	74
	하의	바지통	허리30인치 기준 $7\frac{3}{4}$인치~8인치								

제4조(교복착용 시 준수사항)

① 교복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입는다.

② 규정된 교복형태를 임의로 변형해서 입지 못한다.

③ 학교생활에서는 반드시 규정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행사 등 학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유복을 착용 할 수 있다.

④ 외투(자유복)는 동복 착용 시기에만, 교복 위에 착용 할 수 있으며, 원색(빨간색, 노란색)이나 형광색 그리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구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착용 할 수 없다.

⑤ 명찰은 탈부착 식으로 하되 교내에서는 패용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5조(교복 착용 시기)

① 동복: 10월～익 년 4월까지

② 춘추복: 4월말～5월, 9월초～9월말

③ 하복: 6월～8월

④ 생활복 : 생활복도 교복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복 착용 시기에 맞게 생활복을 입고 등·하교 할 수 있다

⑤ 단, 기후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혼복 기간을 둘 수 있다.

제6조(두발)

① 염색은 할 수 없다.

② 두발 상태는 단정히 한다.

제7조(슬리퍼의 착용) 슬리퍼는 교실 및 복도에서만 착용할 수 있다.

제8조(가방의 사용)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 하교 시에는 항상 지니고 다닌다.

제9조(부착물 및 기타) 노출된 형식의 목걸이와 신체를 이용한 피어싱과 문신(文身)은 하지 않는다.

3.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지 금지) 휴대전화는 일과 중에는 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아침 조례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시간에 회수한다.

제3조(사용 금지) 수업 시간 중에는 지도교사의 허락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4. 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의 정규 고사(중간, 기말) 시행 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선의의 학생을 보호하며, 원칙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험의 성적의 변화를 꾀하는 일체의 직·간접 적인 행위와 감독 교사의 주의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1장 담임 교사의 의무

제3조(고사장 배치)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고사장 배치표에 따라 고사장을 설치한다.
제4조(게시물 철거) 교실 내 게시물 중, 시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모두 제거한다.
제5조(시험 방해물 제거) 교실 책상 서랍에 있는 모든 물품을 제거하여야 하며, 책상 위와 벽 등에 있는 시험에 방해되는 낙서를 제거한다.

제2장 감독 교사의 의무

제6조(시험 방해물 제거) 시험 시작 전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 외, 모든 소지품이나 책상 속에 있는 물품을 가방 속에 넣어 교실 전후 면에 놓도록 지시한다.
제7조(부정행위 예방) 신체의 일부나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부정행위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도록 지시한다.

제3장 부정행위에 대한 사무 처리 절차

제8조(감독 교사)
①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상황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생활 지도 교사에게 경위서와 근거 자료(답안카드 포함) 등과 부정행위 학생을 인계한다
② 부정행위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독 교사와 해당 학생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는 감독 교사의 판단을 우선하여 결정한다.
제9조(해당 학년 생활 지도 교사) 학년 생활 지도 교사는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담당 교사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교과목 담당교사) 교과목 담당 교사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의 채점을 보류한다.
제11조(이의 신청) 부정행위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학생은 상황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해당 학년 생활 지도 교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와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5.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지도를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체벌 금지)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3조(언어폭력금지) 학생이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언어폭력을 금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 교육 계획 및 운영)

① 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학교 행사시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한 부모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한다.

제5조(교사의 권리와 책임)

①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6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학생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7조(문제행동 학생 지도 방침)

①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②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거듭 불응하는 학생을 위한 특별격리지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제8조(단계별 운영)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상담 및 경고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② 교실 안 지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을 분리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③ 교실 밖 격리

교실 내에서 교사의 지도로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특별격리지도를 받도록 한다.

④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특별격리지도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 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⑤ 징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⑥ 지역 교육 지원청 연계 교육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징계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 교육 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양성 평등

제9조(정의)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

제10조(목적) 학교 스스로 양성 평등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환경조성과 양성 평등 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11조(계획 및 운영) 양성평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으로 연간 교육계획 수립 후 관련 담당교사를 배정하여 교육 운영.

제3장 특별 격리지도 운영

제12조(목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격리하기 위해 특별격리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3조(담당자) 특별격리지도 운영의 담당자는 교감으로 하며 전문상담자의 도움을 받는다.

제14조(설치 장소) 특별격리지도는 상담실, 별도 교실, 교무실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한다.

제15조(교육활동 내용)

① 특별격리지도 교육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황 파악 활동 : 학생이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기술한다.

㉯ 기본 상담 및 훈육

㉰ 해당 교과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실시

㉱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작성

㉳ 전문상담자와 연계 활동

② 특별격리지도 활동 사후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황 파악 활동 시 학생이 자신이 겪은 상황과 관련하여 자기의 생각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 칸을 만들어 작성하게 한다.

㉯ 특별격리지도 관리자는 학생이 작성한 것을 해당 교사에게 전달, 필요시 교사의 답글을 통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 특별격리지도 담당자 혹은 학교 관리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장 체벌 발생 시 조치

제16조(학생고충처리센터)

① 학교관리자는 학생들이 체벌 발생을 알릴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고충처리센터 게시판을 운영한다.

② 학생고충처리센터에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17조(단계별 조치) 체벌 발생 시 단계별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고 : 체벌 발생 시 학생은 학생고충처리센터 또는 교감에게 직접 체벌 상황에 대해 알린다.

② 조사 :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체벌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충

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③ 중재 : 교감은 교사 학생 간 직, 간접적으로 중재 및 화해를 유도하며,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 수용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④ 연수명령 조치 : 학교장은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해 자비연수를 이수하도록 명령하며, 연수는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 분쟁 해결 및 평화교육 등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 교육위원회가 발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학교장이 공고하며, 개정 사실을 공고함과 아울러 그 효력을 발생한다.

6. 기타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선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裁可)를 받아 시행한다.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성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003호)에 의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③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④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성폭력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담당교사나 학생회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제6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학부모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본교의 교감

㉯ 본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 판사·검사·변호사

㉲ 본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를 한다.

⑤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의 의사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⑦ 자치위원 재위촉의 경우에도 신규위촉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제7조(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각종 보고사항
㉱ 심의내용 및 의결 ·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등

제8조(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상담실 설치 · 전문상담교사 배치 · 전담기구 구성)

①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 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②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 교사를 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진로상담부장이 겸임한다.

③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구는 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학생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안처리 등)

① 책임교사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사안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받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안의 내용 및 징계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한다.

③ 책임교사는 피해학생진술서, 피해학생보호자의견서, 가해학생진술서, 가해학생보호자의견서, 담임의견서, 담당교사의 사건경위서, 상담교사의견서, 상담전문가 · 의사의 소견서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회의 자료로 제출한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의견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을 시는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 자료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진술을 참고로 심의 · 결정사항을 학교장에게 요청 한다.

⑤ 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으로부터 조치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장 보호 및 징계

제12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삭제(2012.4.11 시행)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교육청 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

제12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5항을 준용한다.(신설)

제13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절차 등)

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분쟁조정 및 비밀누설 금지

제15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②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③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제1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위원 중에서 분쟁조정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분쟁조정 개시 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교 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③ 제12조, 제12조 2,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①제22조 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규정의 제 · 개정)

①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 · 학부모 · 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별표1>

유 형	구 체 적 내 용
언어폭력	① 상호 언어 싸움을 한 자 ② 상호 언어 싸움 후 재발 시 ③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언어폭행한 자 ④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언어폭행이 재발 시 ⑤ 협박,위협 등으로 언어 폭행한 자 ⑥ 협박, 위협 등으로 언어 폭행이 재발 시
집단 따돌림	① 집단 따돌림 단순 가담자 ② 집단 따돌림 주도자 ③ 반복적 집단따돌림 가담자 ④ 반복적 집단따돌림 주도자
폭행 상해	① 칼 등 흉기 소지 ② 폭행상해(2주 이내 가벼운 상처) ③ 쌍방구타(2주 이내 가벼운 상처) ④ 폭행상해(3~4주) ⑤ 폭행상해(4주 이상) ⑥ 폭행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후 재발 ⑦ 폭행으로 출석정지 후 재발 ⑧ 폭행으로 출석정지 12일 후 재발 ⑨ 유해약물복용 환각상태에서 폭행 ⑩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후 훈방 ⑪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후 훈방 ⑫ 흉기사용 폭행 상해 ⑬ 형법상 유죄판결
금품 갈취	① 흉기 사용 협박 ② 폭력을 사용한 금품갈취 ③ 폭력을 사용한 금품갈취 재발 ④ 상습적 금품갈취
성폭행	① 성추행 및 성희롱(동성 간 포함) ② 성폭행(동성간 포함)
사이버 폭력	① 사이버 상에서의 공갈, 협박, 모욕 등 ②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폭력서클 및 집단 폭행	① 폭력서클 단순 가담자 ② 폭력서클 조직 및 주도자 ③ 폭력서클 해체 후 재조직한 자 ④ 집단폭행 가담자 ⑤ 집단폭행 선동 및 주도자 ⑥ 흉기를 사용하여 집단폭행한 자

부 칙

1. 이 위원회의 규정은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8887호, 2008.03.14)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003호, 2008.09.12)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2.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8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0년 08월 05일 개정하여 시행한다.